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27709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종근, 서예슬

변론 종결2023. 5. 25.

판결 선고2023.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776,373원 및 그 중 702,823,720원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463,199,12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1)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2. 23.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의료법인 C의 대표자인 이사였다.
- 2) 원고는 2016. 3. 17.경 의료법인 C과 사이에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취득원가 538,332,600원, 월 리스료 12,544,300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8.6%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의료법인 C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의료법인 C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상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645,999,12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 3) 원고는 2016. 4. 4.경 의료법인 C과 사이에 MRI 등 의료기기를 취득원가 681,000,000원, 월 리스료 15,868,800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8.6%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 2리스계약을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의료법인 C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의료법인 C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상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817,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 4) 의료법인 C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20. 10. 29.경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 5)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22. 8. 4.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의료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등 중도해지 정산금 채무는 358,570,014원(=원금 310,243,299원 + 연체이자 48,326,715원)이었고, 같은 날 기준으로 이 사건 제2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의료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등 중도해지

정산금 채무는 484,218,582원(=원금 418,970,269원 + 연체이자 65,248,313원)이었다.

6) 한편, 2017. 4. 25.경 D이 의료법인 C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후 의료법인 C은 2017. 9. 25. 청주지방법원 2017회합5001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4. 의료법인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8. 10.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의료법인 C에 대한 위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다.

7) 의료법인 C은 위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된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고1), 앞서 본 2022. 8. 4.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연체이자 등을 계산하면, 2023. 3. 16.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의료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등 중도해지 정산금 채무는 361,495,718원(=원금 297,322,824원 + 연체이자 64,172,894원)이고, 같은 날 기준으로 이 사건 제2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의료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등 중도해지 정산금 채무는 492,280,655원(=원금 405,500,896원 + 연체이자 86,779,759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의 보증채무최고액인 1,463,199,120원(=이 사건 제1리스계약의 보증채무최고액 645,999,120원 +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의 보증채무최고액 817,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53,776,373원(=2023. 3. 16. 기준 이 사건 제1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의료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등 중도해지 정산금 채무 361,495,718원 + 2023. 3. 16. 기준 이 사건 제2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의료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등 중도해지 정산금 채무 492,280,655원) 및 그 중 702,823,720원(=2023. 3. 16. 기준 이 사건 제1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의료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등 중도해지 정산금 채무 중 원금 297,322,824원 + 2023. 3. 16. 기준 이 사건 제2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의료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등 중도해지 정산금 채무 중 원금 405,500,89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3.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8.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5.경 의료법인 C의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경영권을 D에게 모두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대표자가 된 D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2017. 8.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연대보증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 가사 연대보증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의료법인 C의 대표자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이후 대표자직을 사임하고 퇴사한 것은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된 2017.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연대보증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4. 25.경 의료법인 C의 대표자직을 사임하면서 그 무렵 D이 의료법인 C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 피고는 2017. 8. 2.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할 것을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2017. 8. 3.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연대보증계약 해지 및 연대보증인 교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 해지 및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을 받아들여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합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인정 여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의료법인 C의 대표자라는 지위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이상 그 대표자 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동민

1) 원고는 2023.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일부 변제금을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함을 전제로 최종 청구금액을 정리하였다.